

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Q&A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돋고자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고시 제2025-247호(2025. 12. 30.)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 공고 제2025-33호(2025. 12. 31.)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고시·세부사항)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 Q&A)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고시·세부사항, Q&A)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 장기근속 장려금

번호	질의	답변
1	<p>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확대 되었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4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년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개시 시점이 기존 '36개월 이상 근무'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로 단축·완화되었습니다.- 단, 12개월 동안 매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의 종사자와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해당 급여 유형에서 동일 직종으로 월 120시간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관의 종사자(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목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동일 직종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2	<p>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개시 시점과 계속근무 기간별 금액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4 제6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년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개시 시점이 기존 '36개월 이상 근무'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로 단축·완화되었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액의 변경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4개월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종사자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 수행 종사자 제외)	50,000	110,000	130,000	150,000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 수행 종사자	50,000	140,000	160,000	180,000
※ 위 금액에는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음						
3	<p>이번에 지급 대상 직종 으로 추가된 위생원의 장기근속 장려금 수령 조건은 무엇인가요?</p> <p>※ (관련 근거) 고시 제11조의4 제1항제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의(세탁물 전량을 자체 세탁 하는 기관만 해당) 위생원은 해당 직종으로 월 120 시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탁물의 일부라도 위탁을 하는 노인요양 시설의 위생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p>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위생원도 2026년 1월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p> <p>※ (관련 근거) 고시 제11조의4 제1항제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2026년 1월 청구 시점 기준으로, 전월까지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위생원으로 2025년 1월부터 계속 근무 하였다면 2026년 1월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p>장기근속장려금을 수령 중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휴직이나 퇴사 후 다시 복직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계속하여 수령하려면 언제까지 복직 또는 재 입사를 해야 하나요?</p> <p>※ (관련 근거): 고시 제11조의4 제3항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복직한 종사자의 복직일 또는 재입사일이 2026.1.1. 이후 인 경우,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복직일 또는 재입사일이 2026.1.3.인 종사자가 근무를 연속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서는 6개월 이내*인 2025.7.4.부터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 '180일 이내'가 아닌 '6개월 이내' 임을 유의 - 아울러, 종전 규정과 변함없이 휴직 및 퇴사 기간은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복직 또는 재입사한 월의 근무 시간이 월 120시간(또는 월 60 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월 역시 '계속근무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로, 복직일 또는 재입사일이 2025.12.31.이전인 경우에는 복직일 또는 재입사일 당시의 고시규정이 적용되므로, 종사자가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기관에 동일직종으로 복직 또는 재입사하는 경우에만 근무를 연속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p>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38개월을 근무하다 2026.2.부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동일직종인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장기근속 장려금액이 어떻게 변경되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4 제3항제4호, 제6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에 한하여 동일직종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관기호 및 급여유형이 다른 경우라도 근무기간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장기근속 장려금액은 해당 월에 근무한 급여유형의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합니다. - 따라서, 해당 월에 근무하는 급여유형의 근무시간 충족여부에 따라 장기근속 장려금액이 상이하게 되므로, 사례의 경우는 2026년 2월에 각 기관에서의 근무시간 충족여부에 따라 장기근속 장려금이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p>주야간보호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40개월을 근무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던 중 2026.1.1.부터 이직하여 기관기호가 다른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아오던 장기근속 장려금액이 어떻게 변경되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4 제1항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가 ①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②하나의 직종으로 ③일정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여 수급자에게 숙련된 급여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장기근속 장려금의 산정을 위해서는 상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종사자가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월 120시간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장기근속 장려금의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 사례의 경우에는 이직한 기관에서 12개월 이상

		직종의 변경 없이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2027년 1월부터 5만원의 장기근속 장려금을 새로이 청구 가능합니다.						
8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업무정지 등)으로 종사자가 근무를 하지 못했을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의 계속 근무로 연계가 가능한가요? ※ (관련 근거)고시 제11조의4 제3항제2호,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장기요양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업무정지 기간 동안 월별 근무시간(월 60시간 또는 120시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 이내라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연계 가능합니다. - 또한, 행정처분이 아닌 수급자 입원, 사망 등 급여 중단으로 인해 월별 근무시간(월 60시간 또는 120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 이내라면 위와 동일하게 계속 근무한 것으로 연계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내역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 (관련 근거)고시 제11조의4 제10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은 장기요양기관이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전월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해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반드시 공단에 전자문서교환 방식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방법은 업무포털 전산 오픈 시 추가 안내 예정 						
10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내역 제출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 (관련 근거) 고시 제11조의4 제9항, 제10항, 제1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 개선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26년 3월부터 전월(2월)에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2월 중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26년 3월 급여비용 청구 시 공단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과정(예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3%;">2026년 1월</th> <th style="width: 33%;">2026년 2월</th> <th style="width: 33%;">2026년 3월</th> </tr> </thead> <tbody> <tr> <td>▶ 급여제공 (방문요양 등)</td> <td> <input type="radio"/> 1월분 급여비용 청구 (기관→공단) ↓ <input type="radio"/> 1월분 급여비용(장기근속 장려금 등) 지급 (공단→기관) ↓ <input type="radio"/> 1월분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 (기관→종사자) </td> <td> <input type="radio"/> 2월분 급여비용 청구 전 공단에서 2월에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1월분에 대해 종사자에게 지급한 내역 제출 (기관→공단) ↓ <input type="radio"/> 2월분 급여비용 청구 (기관→공단) ↓ <input type="radio"/> 2월분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 (기관→종사자) </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전산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p>	2026년 1월	2026년 2월	2026년 3월	▶ 급여제공 (방문요양 등)	<input type="radio"/> 1월분 급여비용 청구 (기관→공단) ↓ <input type="radio"/> 1월분 급여비용(장기근속 장려금 등) 지급 (공단→기관) ↓ <input type="radio"/> 1월분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 (기관→종사자)	<input type="radio"/> 2월분 급여비용 청구 전 공단에서 2월에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1월분에 대해 종사자에게 지급한 내역 제출 (기관→공단) ↓ <input type="radio"/> 2월분 급여비용 청구 (기관→공단) ↓ <input type="radio"/> 2월분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 (기관→종사자)
2026년 1월	2026년 2월	2026년 3월						
▶ 급여제공 (방문요양 등)	<input type="radio"/> 1월분 급여비용 청구 (기관→공단) ↓ <input type="radio"/> 1월분 급여비용(장기근속 장려금 등) 지급 (공단→기관) ↓ <input type="radio"/> 1월분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 (기관→종사자)	<input type="radio"/> 2월분 급여비용 청구 전 공단에서 2월에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1월분에 대해 종사자에게 지급한 내역 제출 (기관→공단) ↓ <input type="radio"/> 2월분 급여비용 청구 (기관→공단) ↓ <input type="radio"/> 2월분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 (기관→종사자)						

□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의 개정 규정은 ‘26년7월1일 시행

번호	질의	답변
11	선임 요양보호사는 신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요? ※ (관련근거)고시 제11조의6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닙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도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으로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술 지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 및 점검,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2	선임 요양보호사의 요건 중 60개월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6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임 요양보호사의 요건 중 ‘60개월’은 공단에 신고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1개월로 산정하여 60개월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각각 60개월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3	선임 요양보호사 2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선임 요양보호사들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 수당 산정이 가능한가요? ※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7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당 산정이 불가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산정이 가능합니다.
14	시설급여기관에서 54개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6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매월 120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60개월 이상인데, 노인요양시설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6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는 시설급여기관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각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이고,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정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경우,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54개월은 노인요양시설의 선임 요양보호사 근무경력 요건에 포함되지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근무한 6개월은 시설급여기관의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아 노인요양시설의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15	<p>과거 노인요양시설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선임 요양 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6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할 수 없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 기관 간에는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요건이 상호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 근무경력 충족 후 승급교육을 추가 이수하셔야 합니다.
16	<p>현원 100명인 노인요양 시설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7 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명까지 가능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25명마다 1명씩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17	<p>2025년 10월 입소자가 75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3명을 지정해서 운영하다가, 11월에 입소자가 73명으로 줄었고 12월에는 76명이 되었습니다. 이 때 11월도 3명 모두 수당 산정이 가능한가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7 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은 2명만 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25명마다 1명씩 산정하며, 10월에는 입소자가 75명이므로 선임 요양보호사 3명에 대한 수당 산정이 가능하나, 11월에는 입소자가 73명이므로 2명에 대해서만 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18	<p>이용자 현원 100명인 주·야간보호기관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몇 명까지 지정할 수 있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까지 가능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이용자 35명마다 1명씩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19	<p>2026년 4월 이용자가 106명인 주·야간보호기관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3명을 지정해서 운영하다가 5월에 이용자가 10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 5월도 3명 모두 수당 산정이 가능한가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7 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은 2명만 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에서 35명마다 1명씩 산정하며, 4월에는 이용자가 106명이므로 선임 요양보호사 3명에 대한 수당 산정이 가능하나, 5월에는 이용자가 103명이므로 2명에 대해서만 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번호	질의	답변
20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은 모든 종사자가 받을 수 있나요?	<p>○ 아닙니다. 별표 2의 지역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직접인력(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만 해당됩니다.</p> <p>(1)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월 120시간 이상 근무 (2) 가정방문급여 제공 기관: 제57조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 월 120시간 이상 근무 (3) 가정방문급여 제공 기관: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 월 60시간 이상 근무</p>
21	경기 연천군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 기관에서 각각 월 120시간, 60시간 근무한 요양보호사입니다. 이 경우 2026년에 신설된 농·어촌 인력수급 취약지역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8 및 [별표2]	<p>○ 아닙니다.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 요원 지원금은 종사자*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의 지원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p> <p>* 직접인력(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이에,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에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1개의 기관에서만 최대 5만원의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p>
22	강원도 속초에 소재한 방문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 보호사입니다. 강원 고성 군에 있는 2등급 수급자 어르신에게 월 60시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데, 이 경우 농·어촌 인력 수급취약지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8 및 [별표2]	<p>○ 아닙니다.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 요원 지원금은 수급자 가정의 소재지가 아닌 별표2 인력수급취약지역 52개 시군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기준을 충족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p> <p>【별표2】 <신설 2026.1.1.></p> <p style="text-align: center;">< 인력수급취약지역 52개 시군구 ></p>

구분	지역명
경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남	청양군, 태안군
전북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경북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중증 수급자 가산(방문요양/방문목욕)

번호	질의	답변
23	<p>2등급 수급자에게 24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금이 얼마인가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19조의2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 당 2,000원 가산하며,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 이므로 가산금 6,000원을 지급합니다. - 참고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고시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고시 제23조제4항)
24	<p>1등급 수급자에게 150분과 30분을 나누어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금이 얼마인가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19조의2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분과 30분을 나누어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방문 간격 시간이 2시간 미만이면 급여제공시간을 합산 (고시 제19조제1항)하게 되므로, 1회 180분 제공으로 보아 가산금 6,000원을 지급하며, - 방문간격이 2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제공시간 합산이 불가하므로 150분을 제공한 1회 차에 대해서만 4,000원*을 지급합니다. <p>* 2회 차는 30분만 제공되어 산정 불가</p>
25	<p>1등급 수급자에게 요실금 등의 사유로 60분 이상 방문목욕급여(요양보호사 2인 제공)를 1일 2회 제공한 경우 가산금은 얼마인가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26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목욕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은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씩 가산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수급자에 대해 같은 날 방문목욕급여를 2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일 가산금은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씩 총 6,000원을 지급 합니다.

□ 방문간호

번호	질의	답변
26	<p>2026년 1월 2등급으로 처음 인정받고,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한 적 없는 수급자입니다. 이 경우 방문간호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몇 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28조제8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회입니다.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급여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3회 이용 시까지 급여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해당 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 또한, '26년 이전에 1,2등급으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26년 이전에 방문간호급여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7	<p>2023년~2026년에 1등급인 수급자가 '24년도에 방문간호급여를 1회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수급자는 고시 제28조제8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28조제8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니오.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수급자는 1등급자로 방문간호급여를 '24년도 이미 1회 이용하여 최초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8	<p>2026년 이전에 3등급, 2026년 이후로 2등급인 수급자가 방문간호급여를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면 해당 수급자는 2026.1.1.부터 고시 제28조제8항에 따른 방문간호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28조제8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수급자는 '26년 이전에 방문간호급여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어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로 3회 이용 시까지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수급자가 '26년 이전에 3,4등급으로 방문간호급여를 한번이라도 이용하였다면 '26년 이후 1,2등급을 인정 받았다하더라도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9	<p>처음으로 1등급을 인정 받은 치매 수급자입니다. 고시 제27조제5항(치매관리서비스)에 따른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이용했습니다. 이후에 받는 방문간호급여를 받을 시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 가능 하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28조제8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가능합니다. 중증(1,2등급)수급자는 고시 제27조 제5항에 따른 방문간호급여(치매관리서비스)를 이미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3회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총 3회 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번호	질의	답변																						
30	인건비 지출 비율 신고 시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 서비스 가산 비용은 어떤 급여종류의 인건비로 신고 해야 하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2제2항	○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금은 주야간 보호 급여유형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1	가정방문형 통합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월 중 계약 종료 후 타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13조제10항제2호	○ 네. 다만, 수급자가 월 중에 해당 통합재가서비스 외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및 제36조의2에 따른 단기보호급여에서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제외)를 이용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32	통합재가를 이용하던 수급자가 월 중에 일반 재가급여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도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 (관련근거) 고시 제13조제10항 제2호, 제3호	○ 아닙니다. 월 중 계약 변경 시 가정방문형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단기보호급여에서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제외) (예시) 월 중 계약변경에 따른 가정방문형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여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내용</th> <th>추가 산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서비스유형 변경 (통합재가기관)</td> <td>A기관(가정방문형)</td> <td>↔</td> <td>A기관(주·야간보호형)</td> </tr> <tr> <td>A기관(가정방문형)</td> <td>↔</td> <td>B기관(가정방문형 또는 주·야간보호형)</td> </tr> <tr> <td rowspan="2">급여구분 변경 (통합재가기관 ↔ 일반재가기관)</td> <td>A기관(가정방문형)</td> <td>↔</td> <td>A기관(일반재가급여)</td> </tr> <tr> <td>C기관(일반재가급여)</td> <td>↔</td> <td>A기관(가정방문형)</td> </tr> <tr> <td>A기관(가정방문형)</td> <td>↔</td> <td>C기관(단기보호급여 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td> <td>가능</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추가 산정	서비스유형 변경 (통합재가기관)	A기관(가정방문형)	↔	A기관(주·야간보호형)	A기관(가정방문형)	↔	B기관(가정방문형 또는 주·야간보호형)	급여구분 변경 (통합재가기관 ↔ 일반재가기관)	A기관(가정방문형)	↔	A기관(일반재가급여)	C기관(일반재가급여)	↔	A기관(가정방문형)	A기관(가정방문형)	↔	C기관(단기보호급여 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가능
구분	내용		추가 산정																					
서비스유형 변경 (통합재가기관)	A기관(가정방문형)	↔	A기관(주·야간보호형)																					
	A기관(가정방문형)	↔	B기관(가정방문형 또는 주·야간보호형)																					
급여구분 변경 (통합재가기관 ↔ 일반재가기관)	A기관(가정방문형)	↔	A기관(일반재가급여)																					
	C기관(일반재가급여)	↔	A기관(가정방문형)																					
A기관(가정방문형)	↔	C기관(단기보호급여 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가능																					
33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방문요양 수급자에 대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기관 내에서 주·야간보호 종사자들이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 하더라도 인정되나요?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시행규칙」[별표 1], 고시 제57조, 세부사항 제17조	○ 아닙니다. 방문요양급여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고시 제57조 가산을 적용 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 중 주·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 한하여 주·야간보호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가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요양급여 등에 대해 급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가정방문으로 갈음하여 고시																						

		<p>제57조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로 인정됩니다.</p> <p>* 해당 수급자의 경우 아래 표의 ①이 원칙이나, ②의 경우도 인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급여관리</th><th rowspan="2">종사자 소속</th><th rowspan="2">서식</th></tr> <tr> <th>장소</th><th>시간</th><th>직종</th></tr> </thead> <tbody> <tr> <td>① 수급자의 가정</td><td>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중</td><td>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요양보호사</td><td>방문요양 기관</td><td>제24호</td><td></td></tr> <tr> <td>② 주·야간 보호기관</td><td>주·야간 보호급여 시간 중</td><td>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td><td>주·야간 보호기관</td><td>제24호의2 또는 제24호의3</td><td></td></tr> </tbody> </table>	구분	급여관리			종사자 소속	서식	장소	시간	직종	① 수급자의 가정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중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기관	제24호		② 주·야간 보호기관	주·야간 보호급여 시간 중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주·야간 보호기관	제24호의2 또는 제24호의3	
구분	급여관리			종사자 소속	서식																		
	장소	시간	직종																				
① 수급자의 가정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중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기관	제24호																			
② 주·야간 보호기관	주·야간 보호급여 시간 중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주·야간 보호기관	제24호의2 또는 제24호의3																			
34	<p>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로 방문요양 월 4회, 방문간호 월 2회, 주·야간 보호급여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은 어떻게 적용하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13조제10항제3호</p>	<p>○ 월 중에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의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높은 범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p>																					
35	<p>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로 근무하는 시설장입니다. 주·야간보호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치매수급자에 대하여 주·야간보호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및 방문요양에 대한 급여관리 업무를 주·야간보호에서 함께 수행하고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고시 제57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p> <p>- 해당 수급자는 주·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p> <p>※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 고시 제30조, 제57조, 세부사항 제17조</p>	<p>○ 별지 제24호의2서식은 원칙적으로 주·야간보호 기관이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가 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작성(4번 '급여제공 계획 및 내용 확인' 항목 제외 가능)하는 서식입니다.</p> <p>- 다만,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주·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가정방문을 갈음하여 주·야간보호 제공시간 중에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24호의 2서식(반드시 4번 '급여제공 계획 및 내용 확인'항목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 고시 제57조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p> <p>- 만약 프로그램 관리자인 시설장, 물리(작업)치료사가 고시 제57조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작성 하더라도 고시 제57조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로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36	<p>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주·야간보호(월 10일 이상)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함께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고시 제57조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p> <p>※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별표 1], 고시 제17조제6항, 제5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닙니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가정방문을 갈음하여 주·야간보호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급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시 제57조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로 인정하고 있으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프로그램 관리자의 업무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시간에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고시 제17조제6항의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만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7	<p>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물리(작업)치료사를 필수인력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시간제 인력으로 채용해도 될까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55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물리(작업)치료사 1명을 필수인력으로 채용해야 하며, 시간제 근무도 가능합니다. 이 때, 월 기준 근무시간의 50% 이상 근무했을 경우 고시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고시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물리(작업) 치료사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고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 시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문구 명확화

번호	질의	답변
38	<p>3등급 수급자에게 9시부터 12시 30분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19조제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3등급 수급자에게 210분 이상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정하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에 따른 종일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같은 날 산정할 수 있습니다.
39	<p>딸인 요양보호사가 본인의 어머니에게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날 종일 방문요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닙니다. 고시 제23조제5항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제18조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산정할

	급여도 이용 가능한가요? ※ (관련근거) 고시 제23조제5항	수 없습니다.
40	2등급 수급자에게 270분 이상(9시~13시 30분)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시간대를 나누어(A요양보호사:9시~12시, B요양보호사: 12시~13시 30분) 제공할 수 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19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가능합니다. 고시 제19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으로 인해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시간을 나누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의 급여제공시간에 공백이 없도록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급여비용 가감산 산정

번호	질의	답변
4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변경되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10조제1,2호 세부사항 제22조제2항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닙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 기준은 고시 제10조 및 세부사항(제22조)에서 각각 정하고 있었으나, '26년 개정 시 고시 제10조에 통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방문요양·목욕·간호기관에서 2인의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종사자별 가입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42	입소형 기관의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감액기준이 변경 되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68조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부터 입소형 기관(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 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해당일 급여비용을 미가입 비율에 따라 차등 산정합니다. ○ 이 때, 미가입 비율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가입한 보험상품의 가입기준에 따라 다르며, 수급자 기준으로 가입하는 상품일 경우 미가입 수급자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종사자 기준으로 가입하는 상품일 경우, 미가입 종사자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미만 미가입한 경우, 급여비용의 97%를, - 10% 이상 30% 미만 미가입한 경우, 급여비용의 95%를, - 30% 이상 미가입한 경우, 급여비용의 90%를 각각 산정합니다.
43	2개 이상의 급여유형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유형을 복수로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모두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급여유형별

	<p>관리 업무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57조제2항</p>	<p>급여제공 시간에 각각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하나의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다른 급여유형에 대해서도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기록한다면 모두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p>
44	<p>방문요양, 목욕에 대하여 가산을 모두 적용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방문요양과 목욕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방문목욕에 대한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56조제1항제1호 제58조제1항제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제56조에 따라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은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에 대하여 가산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 방문요양과 목욕을 모두 제공받는 수급자에게 일부 급여유형(방문요양)에 대해서만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에서 제외하고 가산금액을 산정합니다. - 따라서, 방문요양과 목욕을 모두 가산 받고자 하는 기관은 두 가지 급여유형에 대해 모두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만약 한 가지 급여유형에 대한 급여관리 업무를 미수행 시, 해당 수급자의 미수행된 급여유형의 급여비용은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비용의 합에서 제외하여 청구합니다. * 방문요양·목욕 모두 제공받는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 두 개의 급여유형 모두 급여관리 업무를 미수행한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가정 방문비율을 기준으로 가산점수 산정
45	<p>가족 요양보호사 및 일반 요양보호사로부터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5등급 수급자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일반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시간에 방문하여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및 급여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고시 제57조 가산 및 제69조의2에 따른 급여 관리 업무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17조제6항제5호, 제57조제2항, 제69조의2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관리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및 고시 제57조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제57조제2항(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및 제69조의2제1항(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에 따른 방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시 제69조의2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는 반드시 가족요양 시간 중에 방문하여 가족요양 급여에 대한 적정 서비스 제공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해당 사례의 경우 고시 제57조에 따른 가산산정을 위한 급여관리 업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제69조의2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부사항

번호	질의	답변
1	<p>3등급 수급자에게 방문 요양 급여를 21시 20분부터 23시까지(100분)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 가산은 얼마를 산정할 수 있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20조 세부사항 제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은 고시 제20조에 따라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례에서는 22시부터 23시까지 60분에 대하여 가산 비용을 산정이 가능합니다. - 세부사항 제5조에 규정되어있는 계산식에 따라, [기본 급여비용(34,120원) × 가산 산정비율(0.3) × 가산 적용시간(60분) / 급여 제공시간(해당 급여 비용의 최저 급여제공 시간인 90분)]을 적용하여, 6,820원의 가산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 고시 제52조제2항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 반올림
2	<p>3등급 수급자에게 주야간 보호 급여를 공휴일에 08시부터 17시까지(540분)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 가산은 얼마를 산정할 수 있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33조 세부사항 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은 고시 제33조에 따라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례에서는 08시부터 17시까지 540분에 대하여 가산 비용을 산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급여비용의 최저 급여제공 시간은 480분이기 때문에, '가산 적용시간'인 540분이 '급여 제공시간'인 480분을 초과하므로 기본 급여 비용의 가산 산정비율만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기본 급여비용(59,640원) × 가산 산정 비율(0.3)]만을 적용하여, 17,890원의 가산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 고시 제52조제2항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 반올림
3	<p>평일(월~금)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수요일 부모님의 사망으로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언제 사용해야 하나요?</p> <p>※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부터는 종사자의 휴무일은 경조사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토·일요일이 휴무인 종사자가 수요일부터 경조사 휴가를 시작하였다면 5일 동안 (수.목.금.월.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휴가 시작일은 사유 발생 일부터 3일 이내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포함)여야 합니다.
4	<p>대표자인 사회복지사의 유급휴가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26년부터 대표자인 시설장을 포함하여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유급휴가를 근무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제1호	<p>이 때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 제7항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종사자의 경우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 대표자와 가족관계인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따라 가목* 또는 바목** 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p>* 가목: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 바목: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휴가</p>
5	<p>직종변경(대표자인 종사자→ 대표자인 시설장)에 따라 최종 신고 수리일자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산정했던 대표자인 시설장의 유급휴가 산정 기준이 달라지나요?</p> <p>※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제1호</p>	<p>○ 직종변경으로 인해 최종 신고수리일자를 기준으로 계속 근무 기간을 산정해 왔던 대표자인 시설장의 경우, '26년 1월부터 대표자인 종사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 style="margin: 0;">■ 예시 ■</p> <p style="margin: 0;">대표자인 시설장 ↓ 대표자인 사회복지사 ↓ 대표자인 시설장 ↓ 연차 사용기간</p> <p style="margin: 0;">'24.7.1. '25.1.1. 3.16. '25.7.1. '26.1.1. 6.30.</p> <p style="margin: 0;">대표자인 시설장으로 직종 신고 된 날짜('24.7.1.)를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 → '25.7.1.기준 발생한 유급휴가(15개)를 '26.6.30.까지 사용 가능('25. 7. 1. ~ '26. 6. 30.)</p> </div>
6	<p>대표자인 사회복지사의 경우 예비군 훈련에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p> <p>※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제2호</p>	<p>○ 네. '26년부터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예비군·민방위 훈련, 투표에 소요된 시간은 '근무인원 1인'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p>
7	<p>맞춤형 프로그램을 그룹별 나누어 제공한 경우, 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62조, 세부사항 제19조제4항</p>	<p>○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은 프로그램별 1회 60분 이상 제공할 경우 프로그램 횟수에 따라 가산하였으나, '26년부터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수급자 상태에 따라 그룹별로 나누어 실시하더라도 프로그램 종류·강사와 상관없이 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60분 이상 제공한 경우 1일 1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p>

8	<p>맞춤형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나누어 제공할 경우,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 해야 하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56조, 제62조, 세부사항 제19조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급자의 신체기능 저하, 거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에 그 사유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9	<p>외부강사가 제공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에서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인정 받을 수 있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30조제7항, 제6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야간보호에서 진행하는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외부강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고시 제30조에 따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기준(아래 3가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기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프로그램 관리자가 프로그램 계획 수립 ② 1회 60분 이상 반드시 제공 수급자 기준 ③ 치매수급자 등급별 제공 횟수 충족 등 </div>
10	<p>요양보호사 퇴사로 인력배치 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를 적용받고자 합니다. 고시에 명시된 '적극적인 채용노력' 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p> <p>※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27조, 고시 제67조 제2항, 제3항, 세부사항 제21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작스러운 종사자의 퇴사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기관이 아래의 퇴사특례 적용 기준(고시 제67조제2항)을 충족한 경우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동안 1일 8시간씩(보조원 4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때 '적극적인 채용노력'이란 해당 특례 적용 직종에 대한 채용 공고, 면접 등 종사자 채용을 위한 구인 활동(1회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 예시: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채용 공고게시 화면 캡처본, 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 온라인에 게시한 채용자료, 지역신문·현장 게시판 채용공고 사진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채용 면접·공고 등 구인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 퇴사특례 적용 기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적극적인 채용노력 ② 3개월 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 ③ 입소자에 대한 적정 서비스 조치 </div>

11	<p>별지 제24호서식 및 제24호의2서식, 제24호의3서식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p> <p>※ (관련근거) 고시 제17조, 제30조, 제57조, 제69조의2, 제72조, 세부사항 제11조, 제1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24호서식 및 제24호의2서식, 제24호의3서식은 업무 성격이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종류</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작성대상</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별지 제24호 서식</td><td style="padding: 5px;"> <p>가정방문급여(통합재가서비스 포함) 급여관리 업무수행 일지</p> <p>[가정방문급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제57조) 급여관리 수행직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 (고시 제17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프로그램관리자 <p>[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제57조) 급여관리 수행직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별지 제24호 의2 서식</td><td style="padding: 5px;"> <p>주야간보호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일지</p> <p>[주야간보호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제30조)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p>[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 한함 ■ (고시 제57조) 급여관리 수행직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별지 제24호 의3 서식</td><td style="padding: 5px;"> <p>치매전담형 기관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일지</p> <p>[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제72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 <p>[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 한함 ■ (고시 제57조) 급여관리 수행직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td></tr> </tbody> </table>	종류	작성대상	별지 제24호 서식	<p>가정방문급여(통합재가서비스 포함) 급여관리 업무수행 일지</p> <p>[가정방문급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제57조) 급여관리 수행직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 (고시 제17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프로그램관리자 <p>[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제57조) 급여관리 수행직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별지 제24호 의2 서식	<p>주야간보호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일지</p> <p>[주야간보호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제30조)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p>[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 한함 ■ (고시 제57조) 급여관리 수행직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별지 제24호 의3 서식	<p>치매전담형 기관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일지</p> <p>[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제72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 <p>[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 한함 ■ (고시 제57조) 급여관리 수행직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종류	작성대상									
별지 제24호 서식	<p>가정방문급여(통합재가서비스 포함) 급여관리 업무수행 일지</p> <p>[가정방문급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제57조) 급여관리 수행직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 (고시 제17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프로그램관리자 <p>[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제57조) 급여관리 수행직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별지 제24호 의2 서식	<p>주야간보호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일지</p> <p>[주야간보호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제30조)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p>[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 한함 ■ (고시 제57조) 급여관리 수행직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별지 제24호 의3 서식	<p>치매전담형 기관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일지</p> <p>[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제72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 <p>[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 한함 ■ (고시 제57조) 급여관리 수행직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